



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Healthy Forest
Rich Mountains
Happy People

등산지원기본계획

2007~2017



+ www.foa.go.kr



Healthy Forest
Rich Mountains
Happy People

등산지원기본계획

2007~2017



+ www.foa.go.kr



계획수립 개요

-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성격 05
- 2. 용어의 정의 06
- 3. 계획의 주요내용 07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1. 등산·산악레포츠 현황 11
- 2. 장래 여건변화와 수요전망 17
- 3. 정책적 시사점 23



목표 및 추진방향

- 1. 비전과 목표 27
- 2. 목표별 추진방향 29



세부추진계획

- 1. 등산지원체계 구축 33
- 2.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39
- 3.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42
- 4.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47
- 5. 등산서비스 확대 50
- 6. 등산지원 기반구축 54



투자계획

- 1. 투자계획 총괄 61
- 2. 세부 투자계획 63



부 록

- 1.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실행원칙 67
- 2. 전국 등산로 현황 69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70



제1장

계획수립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성격 05 2. 용어의 정의 06 3. 계획의 주요내용 07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성격

1) 계획수립의 배경

- 주 5일 근무제, 웰빙문화 등의 확산으로 등산은 가장 대중적인 산림휴양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등산이나 등산로에 대한 관리 부실로 양질의 등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등산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또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등산·산악레포츠 시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산악레포츠 환경의 조성, 산림휴양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향의 정립 및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7년 ~ 2017년
※ 10년단위 계획이나 최초계획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맞추어 11년 계획으로 수립
- 공간적 범위
 -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휴양활동을 위한 선형의 시설
 - 등산 및 산악레포츠 관련 활동 및 서비스

3) 계획의 성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등산 부문 계획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등산기본계획”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이 수립하는 “등산로관리계획”을 포함한 등산·산악 레포츠 관련 계획의 수립 지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정비 세부계획

2 용어의 정의

- 등산 : 산림과 산림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휴양 및 여가활동
 - 산책, 탐방, 하이킹, 백패킹, 트레킹, 등산, 암릉 및 암벽등반, 등정, 산악레포츠 등

등산관련 개념

구분	개념
트레킹 (Trek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지가 없는 도보여행 또는 산·들로 떠나는 사색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산악인들이 개발한 네팔의 히말라야 등 험한 산악길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트레킹이라는 용어로 정착 •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정처없이 집단 이주한 데서 유래 •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형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장거리 야영여행을 하는 백패킹(back packing)과 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도보거리는 15~20km이며, 산의 높이를 기준으로 5,000m 이상은 등반, 그 이하는 트레킹으로 구분하기도 함
하이킹 (Hi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의 단련과 수양을 목적으로 해변이나 산야로 도보여행(walking)을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 나들이, 가벼운 등산 등의 야외활동을 널리 하이킹이라 함 • 유럽에서는 18세기경부터 하이킹과 워킹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었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워킹레이스가 성행해짐으로써 두 개의 낱말은 별개의 뜻으로 정착
백패킹 (back pac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패킹은 ‘짊어지고 나른다’라는 뜻으로, 1박 이상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정해진 구간을 여행하는 것 • 등산과 트레킹의 묘미가 복합된 레저 스포츠로 산의 정상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발길 닿는 대로 걷는다는 점에서는 트레킹과 유사하지만, 주로 계곡이나 냇가를 끼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점에서 트레킹과 구별 • 영국에서는 하이킹(hiking), 독일에서는 반데룽(Wanderung)이라는 말로 쓰임

- 등산로 : 산림과 그 주변에 위치하면서 인간, 동물 또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형의 통로
 - 탐방로, 자연관찰로, 산책로, 숲길, 임도 등 휴양 및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산림과 산림 주변에 위치한 길
 - 등산로의 접근 및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마을길, 농로, 도로
- 산악레포츠 : 산림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여가·스포츠 활동
 -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오토캠핑, 산악스키 등

3 계획의 주요내용

- 등산현황, 장래 여건변화 및 수요전망
- 등산기본계획의 목표
- 등산정책 부문별 추진계획

부 문	추진 계획	
등산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유형분류 및 등급지정 • 국가 및 지방등산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색 숲길 개발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 자원조사 • 등산로 기본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산악정보 DB 구축 •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시설 관리기준 제정
쾌적한 등산 및 산악레포츠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 훼손 등산로의 정비 • 등산로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 등산로의 체험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 ■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 임도활용 산악레포츠 코스 개발 • 산악레포츠 시설 확대
등산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안내센터 설치·운영 • 산악기상예보 및 영상정보 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교육 확대 •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
등산지원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산악·등산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전달 체계 구축 • 등산문화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 국제협력 확대

○ 투자계획(2007~2017년)

구분	항목	계	2007년	제5차 기본계획기간	
				전반기	후반기
합계	소계	239,007	10,789	133,202	95,016
등산로 실태조사	소계	11,830	6,382	4,670	778
	국비	8,280	4,467	3,269	545
	지방비	3,550	1,915	1,401	234
등산지도 제작	소계	1,572	-	832	740
	국비	1,572	-	832	740
	지방비	-	-	-	-
등산로 정비	소계	131,086	3,632	84,054	43,400
	국비	74,006	2,024	50,902	21,080
	지방비	57,080	1,608	33,152	22,320
등산로 모니터링	소계	12,362	-	6,181	6,181
	국비	10,357	-	5,179	5,179
	지방비	2,005	-	1,002	1,002
등산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소계	24,199	200	9,600	14,400
	국비	16,999	200	6,720	10,080
	지방비	7,200	-	2,880	4,320
등산교육	소계	4,448	200	1,666	2,582
	국비	3,174	200	1,166	1,808
	지방비	1,274	-	500	775
산악레포츠시설 확충	소계	46,405	-	22,845	23,560
	국비	34,255	-	16,770	17,485
	지방비	12,150	-	6,075	6,075
산악구조대 운영	소계	2,000	-	1,000	1,000
	국비	2,000	-	1,000	1,000
	지방비	-	-	-	-
산악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소계	2,850	300	1,500	1,050
	국비	2,850	300	1,500	1,050
	지방비	-	-	-	-
등산문화개선	소계	2,255	75	855	1,325
	국비	1,925	75	729	1,121
	지방비	330	-	126	204

※ 2007년~2011년 등산로 정비사업은 「백두대간 국가숲길」 조성계획 포함



제2장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1. 등산 · 산악레포츠 현황 10 2. 장래 여건변화와 수요전망 17 3. 정책적 시사점 23

1 등산 · 산악레포츠 현황

1) 등산 현황

(1) 등산인구 및 활동특성

-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5명중 4명이 연간 1회 이상 등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인원 462백만명이 등산활동에 참여(한국갤럽조사, 2006)

| 등산인구 현황 |

(단위 : 천명)

등산빈도	참여 인구비율	해당 인구	연인원
합 계	100.0%	37,617	462,042
주 1 회	16.4%	6,163	320,480
월 1 회	23.3%	8,756	105,073
분기 1 회	13.0%	4,923	19,692
연간 1 회	29.8%	11,199	16,798
가지 않음	17.5%	6,576	-

자료 : 한국갤럽(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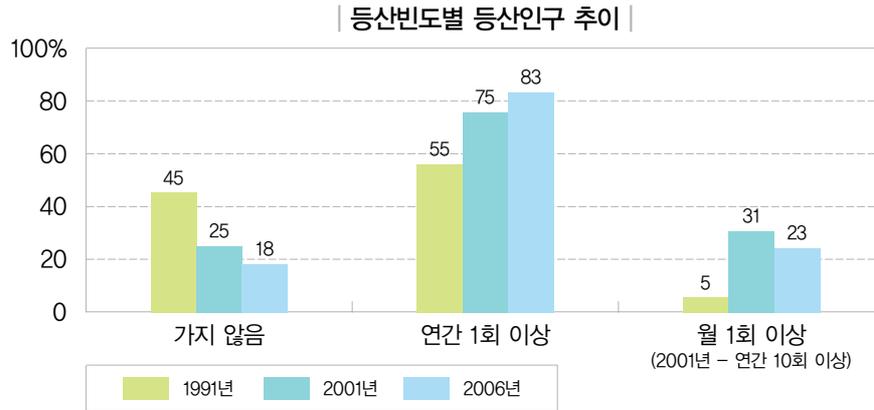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생활체육 종목중 참여율 순위가 1~2위로 가장 인기 있는 취미활동으로 정착

| 생활체육 종목중 등산참여율 순위 |

연 도	1986	1989	1994	1997	2000	2003
1위	육상/조깅	체조/줄넘기	육상/조깅	등산	등산	육상/조깅/속보
2위	축구	축구	체조/줄넘기	농구	체조/줄넘기	등산
3위	체조/줄넘기	육상/조깅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보디빌딩(헬스)
4위	등산	등산	볼링	배드민턴	축구	체조/줄넘기
5위	테니스	농구	농구	수영	보디빌딩(헬스)	수영

자료 : 문화관광부 2005 체육백서

- 여가시간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등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연간 1회 이상 등산인구 비율 : ('91) 55% → ('01) 75% → ('06) 82%



자료 :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1991, 2001, 2006 산림청)

- 등산인구중 노년 및 여성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등산 목적도 다양해짐
 -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노년층 및 여성층 등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연령별 휴일 등산비율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율	38%	45%	68%	85%	63%

자료 : 월간마운틴 2006년 10월호

- 등산 목적이 산 정상에 오르는 등정(登頂) 중심에서 건강을 위한 산보나 자연체험으로 다양화됨

| 등산형태 |

등산유형	1일 워킹	2일이상 워킹	집근처 야산	암벽등반	암릉등반
비율	36%	13%	24%	18%	9%

자료 : 월간마운틴 2006년 10월호

- 지역산악회 등 모집산악회가 주관하는 단체산행 활성화
 - 전국에 1,128개의 모집산악회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됨(생명의숲, 2005)
 - 연간 산행 모집횟수는 평균 38.9회, 평균 참여인원은 62명으로 모집산악회를 통해 연인원 1,496만명이 산행에 참여(생명의숲, 2005)

(2) 등산로 현황

- 우리나라에는 1,735개 산에 4,290개 노선과 약 17,598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지방산림청에는 225개 노선 1,521km의 등산로가 있으나 적극적인 등산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3,796개 노선, 14,921km로 등산로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 20개 육상 국립공원에는 269개 노선과 1,156km의 탐방로(등산로)가 있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등산로의 과도한 이용과 관리 부실로 등산로의 훼손이 심화되고 등산로 주변 산림 지역의 식생파괴 가중
 - 전체 등산로의 약 28%인 4,894km는 등산로 바닥이 침식되거나 위험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국립공원이나 대도시 근교의 일부 등산로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등산로가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있음

등산로 현황

(단위 : 개, km)

관리주체	산	노 선	연장거리	정비대상
합 계	1,735	4,290	17,598	4,894
지방자치단체	1,580	3,796	14,921	4,716
지방산림청	140	225	1,521	178
국립공원	15	269	1,156	-

자료 : 산림청(2006년 기준)

- 산림경영시설로서 총 15,825km(ha당 2.47m)의 임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등산, 산악레포츠 등 산림휴양용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임도시설 현황

(단위 : km)

구 분	합 계	국유임도	민유임도	ha당 밀도(m)
임도거리	15,825	4,027	11,798	2.47

자료 : 산림청(2005년 기준)

2) 산악레포츠 현황

(1) 산악레포츠 인구 및 활동특성

- 국내에서 활동중인 주요 산악레포츠로는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6개 종목이 있으며, 종목별 활동인구는 종목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만명~6만명 정도로 추정됨
 - 대표적 종목인 산악자전거나 산악마라톤의 경우 자전거, 마라톤 동호인의 상당수가 해당 종목의 동호인으로 추정됨

산악레포츠 동호인 현황

종 목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추정 동호인 (천명)	주요시설	비 고
	클럽수	회원(명)			
산악자전거	17	1,113	60	임도 약 500km	자전거동호인 약 400만명
산악마라톤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임도 약500km	마라톤동호인 약 400만명
오리엔티어링	16	176	10	30여개소	
행·패러글라이딩	667	14,399	60	활공장 168개	소
암벽등반	11	200	40	인공암벽장 152개소	실내 72 실외 80
서바이벌 게임	3	111	파악안됨	약 90여개소	

자료 : 문화관광부 2005 체육백서, 산림청 내부자료

- 참여·모험형 관광의 활성화로 산악레포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유형의 산악레포츠 활동이 등장
 -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승마, 서바이벌게임 등 기존 산악레포츠 인구가 꾸준히 증가
 - 마운틴보드, 산악용 4륜 바이크(ATV), 지오캐싱(geocaching) 등이 새로운 산악레포츠 종목이 지속적으로 출현
 - ※ 마운틴보드 : 네 개의 바퀴가 달린 보드 위에 몸을 싣고 산비탈을 내려오는 레포츠로 스노보드와는 달리 주로 눈이 오지 않는 계절에 이용
 - ※ 지오캐싱 : geo(지오)와 cache(은닉물)의 합성어로 숨겨놓은 보물을 GPS로 찾는 신종 레포츠

(2) 시설현황

- 전국적으로 총 15,825km의 임도가 있으나, 이중 약 500km의 임도만이 산악 자전거와 산악마라톤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임도관리주체 또는 이용단체에서 관련 대회시에만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유림에 설치한「산악레포츠의 숲」은 현재 18개소(9,843ha)에 이르나 예산지원이 없고 경직된 운영방식으로 6개소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 전국의 활공장은 총 168개소에 이르나 법적 근거 빈약하고 지자체별로 관광시설 또는 관광관련 특구사업 등으로 조성되어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산림피해 발생
- 전국적으로 90여개의 서바이벌게임장이 있으나 주로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운영중임

3) 등산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조성, 보전·관리를 위해 등산로관리청별로 등산로 실태 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등산로관리청별로 매 10년마다 등산로 실태 조사
 - 등산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산로관리청별로 등산로 관리계획 수립
- 등산로 휴식년제 및 등산로 매수제도 도입
 -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훼손이 심한 등산로는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 등산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산로나 그 주변지역의 토지, 임목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등산학교 운영 및 등산안내인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실시
 -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학교를 개설 운영

- 등산안내인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등산안내인을 육성
- 조난 등산객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산악구조대 설치·운영
 - 등산객이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산림항공 관리본부에 산악구조대를 편성
 - 119구조대와 협조하여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매 10년 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
 - 산림청장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2006년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 전국 등산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0년 단위의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조성·관리
 - 백두대간등산로, 역사·문화유적지 연결 등산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종합 정비하되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화하고 대피소 등 필요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
 - 등산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산로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매수 추진
- 등산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 산림보호와 등산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산로 휴식년제’ 및 ‘산악구조대’ 운영
 - 인적자원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서비스 제공
- 백두대간 등산로를 ‘국가탐방로’로 지정하여 국토탐방기능 확보
 - 백두대간 능선 등 주요 등산로를 ‘국가탐방로’(백두대간 숲길)로 지정·관리하고 전국 등산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 탐방기능을 확보
 - 백두대간과 정맥, 역사·문화가 있는 등산로(대관령, 문경새재 등) 및 공원 구역 내의 기존 탐방로를 연결

- 공원시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단기·중기·중주형 등 다양한 탐방코스 개발 및 철쭉, 단풍, 억새, 동굴산행 등 다양한 테마산행과 연계

2 장래 여건변화와 수요전망

1) 사회·경제지표 전망

○ 인구

- 등산인구의 모집단이 되는 전체 인구는 출산율 저하로 약 5천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될 전망(인구증가율 : '00년 0.71% → '23년 0%)
- 평균 수명연장 등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7%로 증가 예상

| 인구 전망 |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증가배수
인구수(천명)	48,294	49,220	49,956	1.03
노인인구 비율(%)	9.3	10.9	15.7	1.79

자료 : 통계청

○ 국내총생산(GDP)

- 2008년경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하고 2020년경에는 3만7천불로서 현재의 일본, 프랑스 수준을 상회할 전망
- ※ 1인당 GDP : 스위스 50천달러, 미국 42, 일본 36, 프랑스 34

| 국내총생산 전망 |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증가배수
GDP(10억\$)	788	1,122	1,824	2.31
1인당 GDP(천달러)	16	23	37	2.31

자료 : 비전2030, 2006년 기획예산처(2005년 불변가격 기준)

○ 여가시간

-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주당 여가시간은 45~48시간에 이를 전망

| 주간 생활시간 변화 전망 |

구 분	1997년	2010년	2020년	비 고
생활필수시간	74.1	75.5	76.0	수면, 식사
노동시간	46.7	41.3	38.0	
자유시간	40.9	45.2	47.8	관광, 여가

자료 : 통계청

2) 등산 · 산악레포츠 수요 전망

(1) 등산수요 전망

□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등산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2007년까지 연간 51백만명의 국민관광수요 추가 증가(한국관광연구원 2001)

- 주말 · 공휴일 증가 : 67일 → 116일 (연월차 포함시 140여일)

- 국내관광총수요량 전망 : ('02) 315 → ('07) 437백만명

※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시행('87년) 후 국내 관광 · 휴양수요가 초기 6년간 약 15%, 이후 약 10% 증가

○ 증가하는 관광 · 휴양수요의 상당부분이 산림으로 집중될 전망

-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여가활동 희망장소로 숲 · 계곡을 가장 선호

• 숲 · 계곡 53.1%(국립산림과학원 2003)

• 숲 · 계곡 56.1%, 바다 · 해변 36%, 기타 8%(한국갤럽조사 2001)

- 산림휴양 수요는 향후 10년간 5~6%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5.8% 성장(지역컨텐츠연구소 미발표)

• 연평균 5% 성장하여 총수요가 2013년 174백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산림청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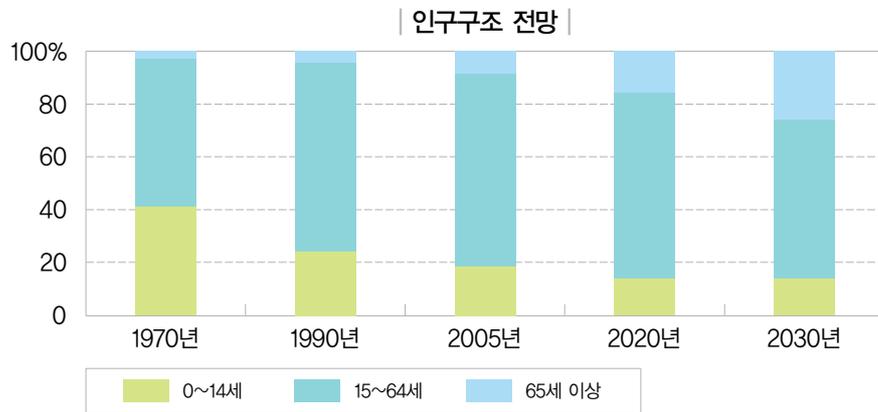
-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새로 시작한 여가활동으로 등산이 3위를 차지

• 영화보기 17.9%, 여행 16.7, 등산 14.3, 헬스 9.5, 산책 7.1 등(2006 국민 여가조사)

- 산림을 기초로 하는 생태관광 활동 증가
 - 2002년 생태관광참여자 107천명 추정, 매년 4%씩 증가 예상

□ 노년·여성층의 등산 참여가 늘어나고 활동유형이 보행활동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등산수요가 다양화

-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권한 신장으로 노년 및 여성 등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 '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7%)에 진입하였으며, '26년 초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20%)로 진입할 전망(희망한국보고서 2006)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10) 55 → ('20) 60% (희망한국보고서 2006)
 - 여성권한척도(UNDP, 80개국) : ('05) 59 → ('10) 45 → ('20) 30위 (희망한국 보고서 2006)



- 등산활동유형이 고산 등정, 암벽등반 등 산악활동 중심에서 능선종주, 근교 산림탐방 등 보행활동 중심으로 변화
 - 등산객의 95%가 워킹 위주의 가벼운 산행에 참여(한국리서치, 2003)
 - 산림휴양활동 참여자의 93%가 등산, 피크닉, 자연풍경감상에 참여(국립산림과학원, 2003)
 - 산림휴양활동 가운데 등산·트레킹, 산책·산림욕 등 보행위주 활동이 65%를 차지

| 우리나라 산림휴양활동 참여현황 |

(단위 : 천원)

활동	등산·트레킹	산책·산림욕	약수터 이용	물놀이	기타
응답수	400	371	240	60	121
비율(%)	33.6	31.1	20.1	5.0	10.2

자료 : 지역컨텐츠연구소, 2004 (미발표)

(2) 산악레포츠 수요 전망

- 산악레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악레포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산악레포츠 인구전망 : ('91) 10 → ('01) 90 → ('07) 210만명
 - ※ 서울시민의 산림휴양활동 유형조사(2001 임업연구원) 결과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등 산악레포츠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남
 - 소득증가와 여가시간의 증가, 동적 여가활동 추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악레포츠 수요의 지속적 증가 예상

1인당 연간 레저비용

(단위 : 천원)

연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비용	1,142	1,227	1,312	1,406	1,508

자료 : 레저백과, 2004

-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체험형 산악레포츠 유형 및 활동 증가
 - 자동차의 대중화와 여가시간의 증가로 가족단위로 직접 체험하면서 즐기는 체재형 산악레포츠참여가 일반화
 - 서바이벌 게임, 마운틴보드, 모터보드, 산악용 4륜바이크(ATV), 지오키링 등 새로운 모험형 산악레포츠가 지속적으로 출현

참여 희망 레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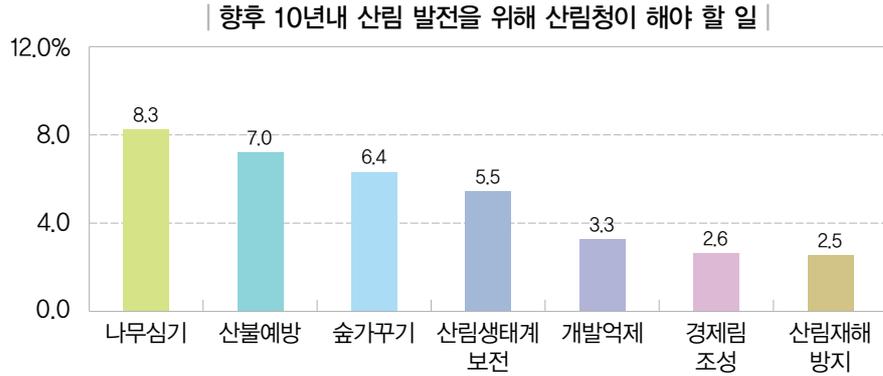
연도	계(%)	자전거(MTB포함)	행·패러글라이딩	암벽타기
2000년	2.4	1.7	0.7	
2003년	2.9	1.1	1.5	0.3

자료 : 2000, 2003년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3) 등산·산악레포츠 여건변화 전망

- 등산수요의 증가로 등산로 및 주변 산림의 훼손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가할 것임
- 늘어나는 등산객으로 인해 등산로 훼손 및 주변 산림의 피해 증가 우려
 - 일부 등산로의 이용집중으로 인한 등산로 노면 침식 및 샅길 등산로 발생
 - 산불발생 증가, 야생동식물 서식지 파괴, 계곡 오염 등 훼손 증가

- 등산로 특성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등산로 정비로 인한 산림훼손 가능성 상존
 - 지나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중심의 등산로 정비시 산림훼손 우려
 - 백두대간, 도시생활권 등 등산로 유형에 따른 정비지침 제정 필요
- 시민단체, 일반국민의 산림훼손에 대한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임
 -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시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



자료 : 산림청 2006,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국민 누구나 등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산환경의 쾌적성, 안전성 및 편의성이 강조될 것임

- 자연체험 및 학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요구
 - 자연학습을 위한 해설판, 안내판 등의 시설설치 확대
- 노인이나 여성 등 노약자가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환경 요구
 - 바닥침식 등 훼손구간, 급경사 구간 등 보행불편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
- 산행중 발행하는 안전사고도 증가에 따라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 필요
 - 산악사고 구조실적이 다른 주요 사고유형에 비해 2배 이상 증가(2005년 기준)

| 주요 사고유형별 구조실적 |

(단위 : 명)

연도	교통사고	승강기	실내감힘	산악사고
2005년	18,975	12,850	8,642	4,722
2004년	18,870	12,078	9,471	3,889
증감(%)	0.56	6.39	9.6	21.4

자료 : 소방방재청, 2005

□ 이용빈도가 높은 도시근교 생활권 등산로에 대한 정비 요구가 커질 것임

-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등산로의 중요성 증대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95%에 이를 전망
 - 도시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38%(2,424천ha)를 점유

- 도시 서민층을 배려한 복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
 - 여가시간 증가에 비해 소득이 따라 주지 못하는 서민층 수요 충족
 -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현상에 대처

| 도시화율 전망 |

(단위 : 천명)

연도	단위	2003년	2020년
도시인구	천명	42,586	47,458
도시화율	%	89	95

자료 : 정보통신부, 2006

□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등산 및 산행문화 정립 요구 증대

- 등산이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산행문화의 보급
 - 금지지역내 취사, 음주, 고성방가 등 산행질서 훼손행위 근절
- 산악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필요
 -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등산관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등산 및 산악관련 정보의 개발 및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의 필요성 증대

-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인터넷(컴퓨터)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증대

|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

(단위 : 천명)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가입자	7,806	10,405	11,178	11,921	12,191

자료 : 정보통신부, 2006

- 등산로 현황, 산악기상, 산행지식 등 등산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 GIS, GPS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등산정보의 전달 범위 확대
- 방송, 인터넷, DMB, VOD 등 다매체시대에 맞는 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

| 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 |

경로	컴퓨터	T V	친구	신문	기타
비율(%)	37.2	21.4	20.8	7.4	20.6

자료 : 2003년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 정확한 등산로 현황 및 이용실태 정보 파악 시급

- 산지도 등 등산로 현황 정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등산지도가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많은 등산로가 누락되어 등산지도의 신뢰성이 부족함
 - 봄·가을철 등 등산성수기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일부 산과 등산로에 이용이 집중되어 등산로 훼손 심화
- 체계적인 등산관리를 위해 등산유형별 등산실태 조사 필요
 - 대간, 정맥 산줄기의 종주 등산, 생활권 등산 등 등산유형별 이용실태파악 필요

□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 시급

- 등산관련 인프라가 등산로에 한정되어 있고, 기존 등산로도 노면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이용 만족도 저하
 - 국립공원, 대도시 근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등산로가 예산부족 등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인 및 여성 등산객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 등산로 훼손은 이용만족도 저하 및 산림생태계의 악화 초래
 - 등산로 훼손이 가중되면서 훼손유형이 노면침식, 노폭확대, 식생파괴 등으로 다양화

□ 등산로의 지속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

- 대간,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가 시·도 또는 시·군간 경계를 이루고 있어 관리주체가 모호
 - 등산로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와 같이 국가, 지자체 등 지원주체별로 관리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국가적으로 중요한 등산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간,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등산로의 지원체계 확립 필요
- 등산로 관리주체에 따라 관리 기준이 상이하어 등산객들의 혼란 야기
 - 백두대간 종주등산 등 지방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간 이견 사항에 대한 체계적 기준 정립 필요

□ 등산안내, 등산교육 등 다양한 등산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등산안내센터, 등산안내인 등 등산안내 서비스가 없어 전문 산행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참여가 제한
 -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은 모집산악회를 통해 산행에 참여하므로써 등산로 이용집중 문제 발생(생명의숲, 2005)
- 등산교육 프로그램이 획일적이고, 교육기회도 크게 부족
 - 등산교육 프로그램이 고산(高山) 등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산악인 위주로 편성
 - 등산교육인원도 연간 1천여명 수준에 불과('06년 교육계획 1,185명)
- 등산지원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산림부서의 등산관련 전문인력과 등산로 관리기관의 행정인력이 크게 부족

□ 산악자전거 등 새롭게 정착되고 있는 산악레포츠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강구

- 새로운 산악레포츠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
 -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승마, 서바이벌 게임 등
- 임도시설을 휴양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임도를 조림, 숲가꾸기, 산불방지 등 임업적 용도로만 활용
- 산악레포츠 시설에 대한 조성기준의 미비로 산림훼손 등 피해 발생
 - 일부 동호회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을 임의로 조성하여 산림훼손 야기

□ 등산·산악관련 콘텐츠 개발 및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

- 「숲에 On」산악정보코너를 중심으로 산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류가 많아 활용성이 떨어짐
 - 산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공 사이트가 부족하고 자료의 주기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등산정보의 다양성 부족 및 등산객의 의견교류 통로 부족
 - 등산관련 정보가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의 위치, 고도, 등산코스 소개 등 간략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양이 절대적으로 부족
 - 등산객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제3장

목표 및 추진방향

1. 비전과 목표 27 2. 목표별 추진방향 29

1 비전과 목표

□ 비전 :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등산·산악레포츠

- 국민 모두가 가보고 싶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등산·산악레포츠 환경 실현
- 미래세대를 위해 등산·산악레포츠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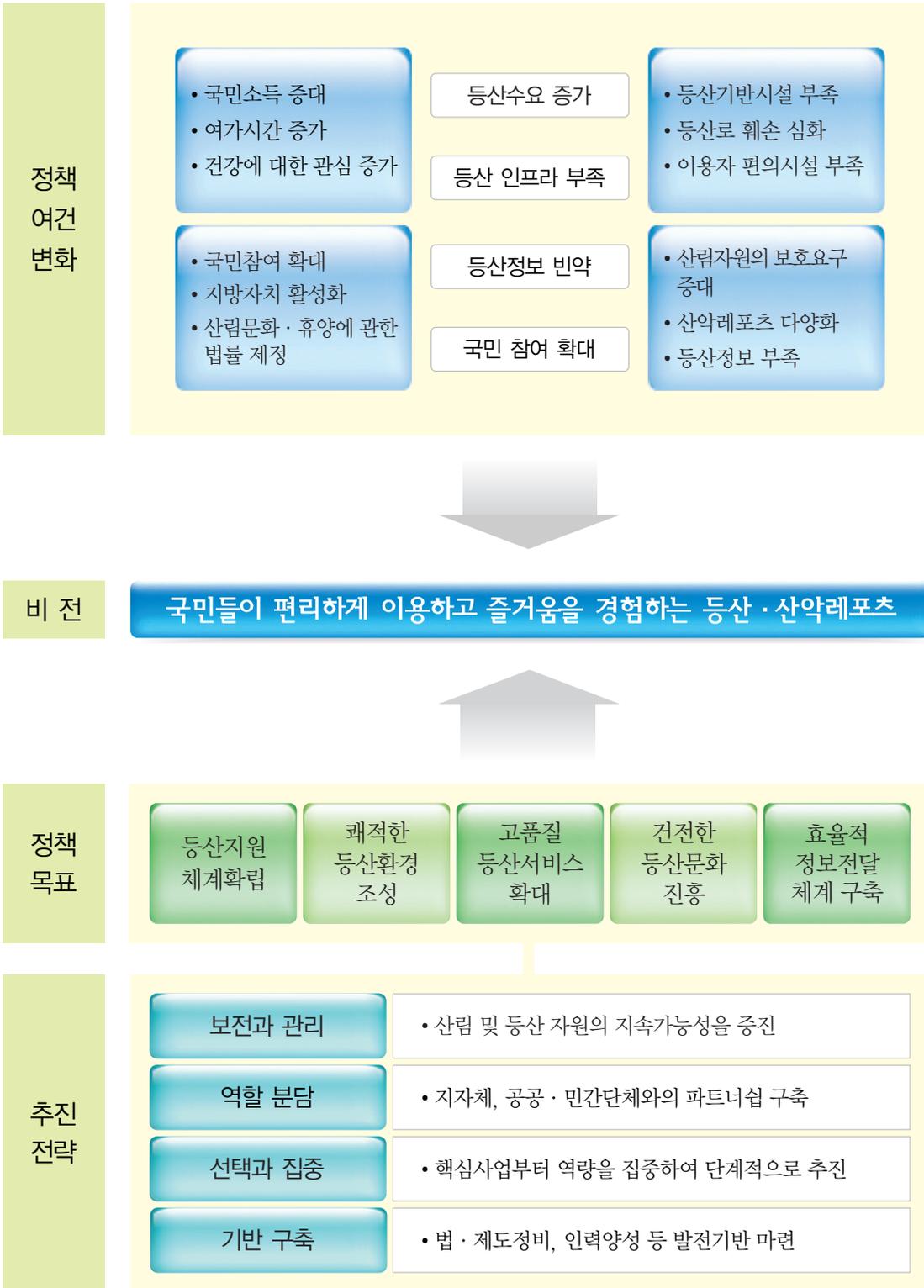
□ 목표

- 전국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를 연결하는 체계화된 등산로 네트워크 구축
-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환경 정비
- 다양한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등산서비스 제공
- 다매체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등산·산악레포츠 정보전달체계 구축

| 등산정책의 계량목표 |

연 도	2006년	2017년	비 고
국가등산로 지정	-	2,618km	대간 및 정맥
등산로 훼손구간 정비	69km	2,595km	전국 등산로
등산지도	-	786도엽	1:25,000 기준
산악레포츠 가능 임도	500km	1,000km	임도활용구간
지역 특색 숲길	-	2,618km	대간 및 정맥
등산학교 운영	1,185명	3,500명	5개 교육과정
등산안내인	30명	150명	100대 명산
등산로 모니터 요원	55명	760명	주요 명산

| 등산정책의 계량목표 |



정책목표	추진방향
1. 등산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등산로 유형 및 등급 지정 • 국가 및 지방 등산로 지정 •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2.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 자원조사 • 등산로 기본도 제작 • 등산·산악정보 DB 구축 •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시설 관리기준 제정
3. 쾌적한 등산 및 산악레포츠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 등산로의 단계적 정비 • 등산로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 등산로의 체험기능 강화 •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 • 임도를 활용한 산악레포츠 코스 개발 • 산악레포츠 시설 정비 • 지역 특색 숲길 개발
4. 고품질의 등산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안내센터 설치·운영 • 산악기상 및 영상정보 서비스 실시 • 등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확대 •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
5. 건전한 등산·산악레포츠 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문화캠페인 전개 • 산악관련 기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6.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정보시스템 확대·개선 • 산악·등산관련 콘텐츠 개발 및 • 다양한 산악정보 전달체계 구축

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www.foa.go.kr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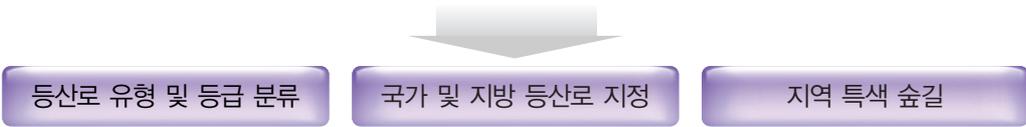
세부 추진계획

1. 등산지원체계 구축 33 2.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39 3.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42
4.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47 5. 등산서비스 확대 50 6. 등산지원 기반구축 54

1 등산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방향

- 대부분의 등산로 관리주체의 부재와 예산부족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대간,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등산로의 경우 행정경계에 위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관할이 모호하여 관리효율성 저하
- ▶ 등산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및 지방등산로를 지정하고, 등산로의 연계성 강화와 등산기반시설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등산수요를 충족



1) 등산로 유형 및 등급 분류

- 등산로의 특성, 지원주체 등에 따라 「국가등산로」, 「지방등산로」, 「지역등산로」 등으로 등산로 지원체계를 구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로관리청별로 관리범위 구분
 - 국가등산로 :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산로
 - 지방등산로 :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 지역등산로 :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 국가, 지자체 등 관리주체별로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등산로 지정
 - 국가등산로를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별로 지방등산로, 지역등산로를 지정
- 등산로 노선별로 입지여건,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유형 구분
 - 등산로의 주요 기능에 따라 일반등산로, 관찰등산로, 종주등산로, 산책등산로 등으로 분류

구분	개념
일반등산로	산록부나 산정상에 이르는 등산 전용 보행도로
관찰등산로	자연학습 또는 자연탐방 목적의 완경사 보행도로
종주등산로	산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에 위치한 종주 목적의 등산로
산책등산로	가벼운 산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완경사의 보행도로

- 등산로 기능에 따라 시설기준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휴양기회스펙트럼(ROS) 제공
 - 대간,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 등은 인공적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자연형으로 관리
 - 도시근교 생활권 등산로는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설 정비

□ 등산로의 보행여건에 따라 이용등급 구분

- 등산로의 경사도, 보행편의성, 편의시설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
 - 1급 : 사고의 위험이 높아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등산로
 - 2급 : 전문적인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노약자 등이 보행하기 어려운 등산로
 - 3급 : 어린이,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완경사 등산로
- 등산로 등급별로 권장 이용수준, 위험구간 등을 표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1급 및 2급 등산로를 중심으로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홍보

2) 국가 및 지방등산로 지정

□ 백두대간과 9개 정맥 산줄기 등의 주요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관리

- 주요 등산로 및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등산로를 발굴 지정
 - 백두대간 등산로 및 접근등산로 등을 우선 지정
 - 낙동정맥 등 9개 정맥 산줄기 등산로로 단계적으로 확대
 - ※ 지정대상 : 2,764km(백두대간 684, 9개 정맥 2,080)
- 국립공원구간중 통행 불가능 지역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는 법정탐방로로 지정토록 협의
 - ※ 백두대간에 속하는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현황 : 13개소, 95km
- 국가등산로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국유화 추진
 - 국가등산로중 사유림 구간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관리(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후에는 국립등산지원센터에 위탁)
 - 국가등산로에 대해서는 등산로 매수제도를 활용하여 국유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지역내 등산로를 지방등산로로 지정 유도

- 시·도, 시·군별로 주변 산줄기의 순환 등산로를 우선 지정토록 추진
 - 주요 산의 등산로, 생활권 등산로 등 등산로 유형별로 구분 지정
- 지정 등산로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
 - 등산기본도에 표기, 산악정보시스템을 통한 안내 등 홍보 지원
 - 등산로 정비시 사업비 우선 배정 및 보조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국가등산로 지정(안) |



구간	시 점	종 점	거리(km)
백두대간 등산로(남한)	설악산	지리산	684
한북정맥 등산로(남한)	장명산	오두산	165
한남정맥 등산로	칠장산	문수산성	210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속리산 천왕봉	칠현산	178
금북정맥 등산로	칠현산	안흥진	285
금남정맥 등산로	마이산	부소산 조룡대	129
금남호남정맥 등산로	장수 영취산	진안 부귀산	66
호남정맥 등산로	섬진강	백운산	395
낙동정맥 등산로	매봉산	다대포 물운대	412
낙남정맥 등산로	지리산 영신봉	낙동강 분산	240

3) 전국 등산로의 연계성 강화

□ 대간,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를 기반으로 전국 등산로네트워크 구축

- 국가등산로와 지방등산로를 중심으로 전국 등산로의 연결성 확보
 - 국가등산로를 간선으로, 지방등산로를 지선으로 하여 연결
 - 국가등산로와 지방등산로의 연결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시·도 및 시·군 단위 일주 등산로 노선 개발과 연계
 - 기 개발된 시·도, 시·군 일주 등산로를 활용하여 구축
 - 지역별로 생태적,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등산로를 발굴하여 연계
 -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 장기적으로 산줄기의 연결성이 확보되는 생활권 등산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마을 뒷산, 공원 등 도시근교 생활권 등산로까지 연결 확대

□ 등산로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결로 확보

- 등산로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결로 및 접근로 발굴 및 개발
 - 노선간 연계가 필요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마을길, 농로 등 연결로 확보
 - 도로개설로 폐지된 옛길 등을 복원·활용
- 등산로 노선과 연결로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연결로 관리시 등산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효율성 증진
 - 등산로와 동일한 체계의 안내시설, 이정표 등 설치

4) 지역특색 숲길 개발

□ 백두대간 등산로를 중심으로 백두대간 숲길 조성

- 기존 백두대간 등산로, 임도 등을 기초로 권역별로 노선 지정
 -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 7개 권역으로 구분
 - 노면, 주변 산림식생 등 훼손구간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 권역별로 다양한 주제를 갖는 2~3개의 체험형 세부노선 설치
 - 학습형 : 역사·문화유적탐사, 야생화탐사, 산림생태탐사 등

- 산악레포츠형 :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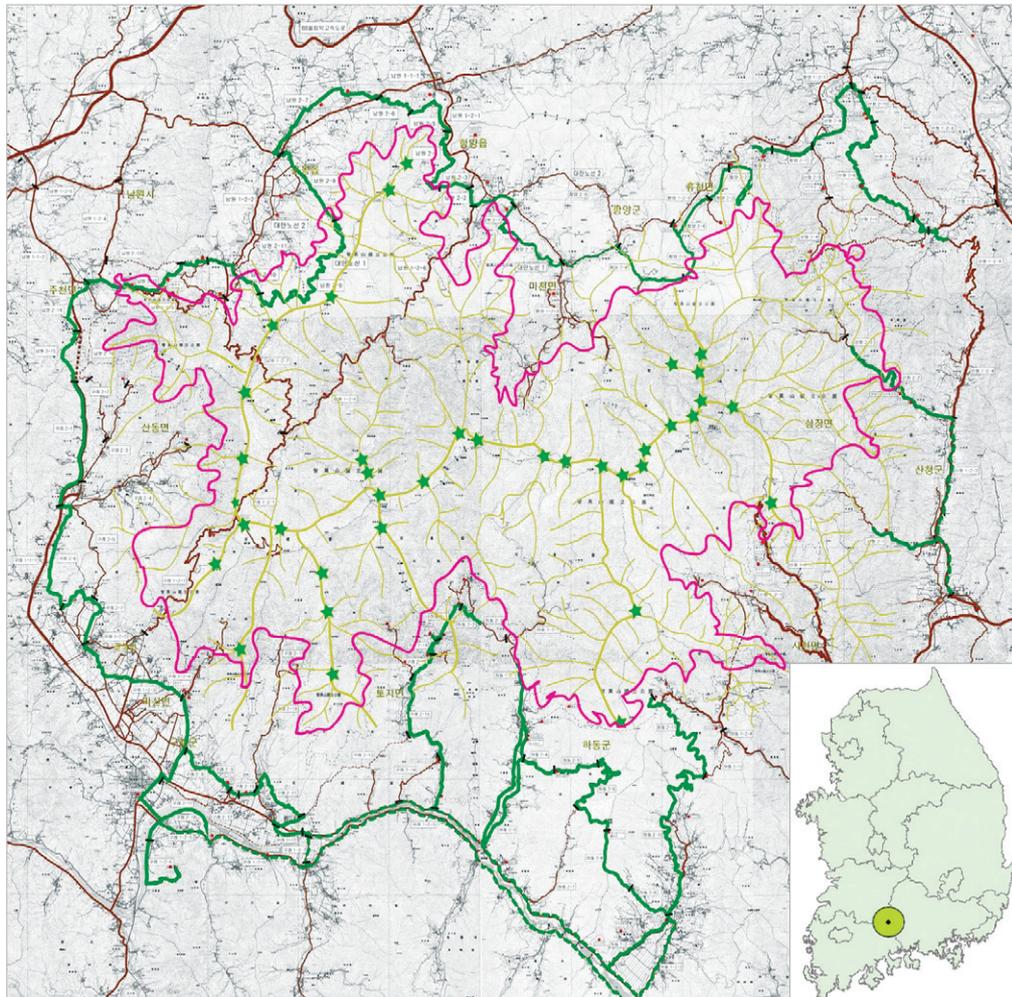
○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

- 노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거리마다 이정표, 위치표지판, 간이 대피소, 화장실 등 이용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 기 개발된 백두대간 CI 등을 활용하여 전체 노선의 통일성 확보

○ 백두대간 숲길 관리협의체 구성

-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국립공원사무소, 지역 산악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리협의체 구성·운영
- 구간 연결성 확보, 휴식년제 운영 등 노선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 환지리산 숲길 노선(안) |



— 지리산 국립공원 — 환지리산 숲길 노선

단계별 추진일정

단 계	기 간	조사내용
1단계	2007~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등산로 지정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등산로 지정 유도 • 백두대간 국가숲길 시범구간 조성 • 환지리산 숲길 시범구간 조성
2단계	2009~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국가숲길 완성 • 백두대간 국가숲길 관리협의회 구성 • 환지리산 숲길 완성
3단계	2013~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정맥 등 정맥권역 숲길 조성 추진 • 백두대간 국가숲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2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현황 및 추진방향

- 정확한 등산로 현황,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지 못해 등산로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많이 알려진 일부 산과 등산로에 이용이 집중되어 등산로 훼손 심화
-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등산지도가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많은 등산로가 누락되어 등산지도의 신뢰성이 부족함
- ▶ 주요 산별로 다양한 등산정보를 조사하여 정보화하고, 등산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등산안내 지도의 제작 및 배포하여 등산객의 이용편의 증진

등산 자원조사

등산로 주변 경관 관리

등산지도 제작

시설기준 제정

1) 등산·산악레포츠 자원조사

□ 대간,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및 도시생활권 등산로 현황조사 실시

- 등산로 분포현황, 이용빈도, 훼손실태 등을 조사
 - 산림청에서 조사지침 수립후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별로 조사
 - 등산로 주변의 동·식물상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도 병행
 - 향후 등산로 정비 및 시설확충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 등산로의 적정 이용수준을 고려한 노선별 수용력 조사·산출
 - 노선별로 훼손실태, 이용현황, 생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국립산림과학원, 대학 등의 전문가들로 조사단 구성·운영
- 산악레포츠 종목별 시설현황, 이용빈도, 문제점 조사
 - 종목별 산림내 시설현황, 이용자 수, 빈도 및 산림훼손 실태 등 조사
 - 무분별한 산악레포츠 시설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 파악

□ 등산로 유형별로 기준 및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등산로 주변 훼손지, 주요 동·식물 서식지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 고정조사구를 설치하여 생태계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고 등산로관리계획 수립시 반영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산로 관리 및 정비사업 실시

2) 등산로 주변 경관관리 강화

□ 등산로 주변 경관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자연적 경관으로 관리

- 등산로 주변 산림의 경관관리 원칙 제정
 - 주요 산별로 지역고유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관리
 - 등산로 주변 일정 거리는 벌채를 제한하고 숲가꾸기시 경관요소 고려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등 숲가꾸기 관련 규정에 반영
 -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등산로 주변 숲가꾸기 기준 제정

□ 등산로변 조망점(viewpoint)에 대한 관리 강화

- 등산로별로 주요 조망점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등산지도 등에 조망점을 표기하고 조망점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조망정보 제공
- 조망점별로 시야확보와 우수한 경관창출을 위해 숲가꾸기 실시
 - 넓은 시야가 확보되도록 정리하고 숲 내부가 잘 보이도록 고사지 정리

3) 전국 등산로 기본도 제작 및 등산·산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국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지도 제작

- 전국 단위, 지역별 및 주요 산별 등산로 기본도 제작
 - 방문자센터, 이정표, 약수터 등 이용자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표기하여 이용편의성 증진
- 등산안내센터 등을 통해 등산객들에게 배포
 - 등산관련 정보제한에 따른 이용집중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방지
-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국가기본도에 반영 추진
 -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등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자원 DB 구축

-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자원현황, 이용형태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역별, 산별, 노선별로 관련 자료를 정보화하여 관리효율성 제고
 - 산악레포츠 종목별, 장소별로 현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청「숲에 On」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 WebGIS 등을 활용하여 산악정보 코너를 확대 개편

4)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시설 및 관리기준 제정

□ 등산로 유형 및 등급별 이용가이드 및 관리매뉴얼 제작

- 등산로 종류 및 등급별로 등산객을 위한 이용가이드 개발
 - 일반 등산객을 위한 등산교육과 연계하여 등산교육 제공
- 등산로 유형 및 등급별로 시설설치 수준, 관리방향 등 개발
 - 등산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관리 매뉴얼 개발

□ 산악레포츠 종목별 시설기준 마련 및 관련 법규 개정

- 종목별 실태조사와 산지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 선정
 - 자원조사결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종목별 기준 마련
 - 종목별로 관련 협회 또는 동호회 등의 의견을 수렴
- 국유림내 산악레포츠 시설 설치기준 제정
 - 국유림 관련 법규에 반영하여 산악레포츠 활성화 유도

단계별 추진일정

단 계	기 간	조사내용
1단계	2007~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및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등산로 분포현황 조사 • 도시생활권 등산로 분포현황 조사 • 등산로 주변 경관관리 원칙 제정 • 전국 등산로 지도 제작
2단계	2009~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이용형태 및 이용빈도 조사 • 등산로별 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3단계	2013~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유형 및 등급 분류 • 등산로별 적정 수용력 산정

3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현황 및 추진방향

- 대도시 근교, 국립공원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많은 등산로가 바닥침식, 등산로 확대로 훼손되고 있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
- 등산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등산로의 안내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이 가중
- ▶ 등산로에 다양한 안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훼손된 등산로는 휴식년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복원 및 정비 추진

훼손 등산로 정비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등산로 휴식년제 운영

1) 훼손 등산로의 정비

□ 훼손된 등산로의 단계적 정비 및 이용불편구간의 구조개량 추진

-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를 우선하여 복원
 - ‘등산로 정비매뉴얼’(산림청, 2006)에 따라 훼손유형별로 복구
 - 동일 노선에서는 훼손이 심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
 - ※ 연간 정비계획 : (’06) 76km → (’07) 93km → (’12) 130km → (’17) 130km
- 급경사지, 식생파괴가 심한 구간은 보행을 위한 구조개량 추진
 -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량
 - 등산로의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은 대체 노선 발굴 후 폐쇄
- 주체별로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 구축 추진
 - 국가 :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지침 마련, 관리모델 제시, 재정지원 등
 - 지자체 : 관할구역내 등산로 정비 실행
 - 시민단체 : 등산로 조사 및 모니터링 협조

| 외국의 등산로 관리 사례 |

- 영국(England)의 등산로 현황
 - 법적 근거 : The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1949)
 - 총연장 193천km (도보 145, 승마·자전거 40, 기타 8)
 - 여가기회 제공을 위해 계속하여 등산로 신규 확장 추진

- 미국의 등산로 관리현황
 - 법적 근거 : National Trails Act(1968)
 - National Trail 현황 : 경관 8, 국가유적 16, 국가휴양 900개소 이상
 - ※ 애팔래치아 트레일(Appalachian Trail) 현황
 - 총연장 3,456km, 미국 동부지역 14개주 관통 (1937년 완성)
 - 주요시설물 : 목재교량, 대피소, 표지판, 보조트레일 등



| 잘 관리된 등산로 |



| 일반 산림지역의 등산로 훼손실태 |

2) 등산로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 등산로 표준 안내시설 기준 제정 및 유형별 안내시스템 도입

- 등산로 표준 안내시설 기준을 개발하여 안내체계의 통일성 확보
 - 주위 경관과 어울리고 해당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태와 디자인으로 제작
 - 백두대간 등산로는 기 개발된 픽토그램 등을 활용



| 주요 등산로 픽토그램 예 |

- 노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거리마다 이정표 등을 설치
 - 권역, 구간, 이동방향 및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안내
 - 목재 등 자연친화적 소재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

□ 코스 주변에 일정거리 마다 위치표지판, 간이 대피소, 화장실 등 이용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 일정 거리별로 위치표지판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응급조치 도모
 - 위치표지판에 현 위치와 신고처를 표시하여 산악구조용을 활용
- 기상이변시 피난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주변에 간이 대피소 설치
 -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친화형 소재를 활용하여 소규모로 설치
- 시설도입시 주변경관과의 조화,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산림훼손 방지
 - 설치전 등산로관리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



| 응급구조 위치판 |

| 간이 대피소 |

| 간이 대피소 |

□ 노령인구·어린이 및 장애우의 등산로 접근성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도입

- 장애우의 등산로 접근편의성 증진을 위해 등산로 정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도시생활권 등산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등산로 조성·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신규 조성·정비 등산로로 확대 적용
 - 점자 안내책자 등 장애우를 위한 등산로 안내 및 체험시설 도입

3) 등산로의 체험기능 강화

□ 등산로의 국토순례 및 숲체험 기능 강화

- 등산을 하면서 숲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설치
 - 야생동식물 해설 표지판, 경관해설판, 조류관찰대 등
- 등산로를 활용한 청소년의 국토순례 활동 지원
 - 단기, 중기, 종주형 등 다양한 탐방코스 조성 운영
 - 테마별, 계절별, 지역별 청소년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방학기간 동안 역사문화 체험, 산림생태체험 캠프 운영

□ 산촌마을, 자연휴양림, 폐교 등을 이용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

- 장기간 이용자를 위해 구간별로 인근 산촌마을, 자연휴양림 등을 지정하여 숙박시설로 활용
 - 주변의 산촌마을,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 연계하여 안내서비스 제공
- 자연휴양림, 산촌마을이 없는 곳은 폐교 등의 시설을 확보하여 야영장으로 활용

4)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

□ 지자체, 지방청 등 등산로관리청별로 등산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정·고시

-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사전예고 실시
 - 산림청 「숲에 On」시스템,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

- 불필요한 등산로 및 복원이 불가능한 등산로 폐쇄 추진
 - 샛길 등산로, 복원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노선 확보 후 폐쇄
 - 등산로 이용현황, 훼손실태, 이용자 의견, 주변 산림식생의 훼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등산로 휴식년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속 강화

- 휴식년제 실시 구간의 출입자에 대한 적발 및 과태료 부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산불단속, 산림보호활동 등과 연계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산림보호활동 범위에 등산로 대상 단속활동 추가

단계별 추진일정 ●		
단 계	기 간	조사내용
1단계	2007~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표준 안내시설 기준 제정 • 등산로 정비 및 안내·편의시설 설치 • 등산로 휴식년 및 폐쇄 대상 등산로 분류
2단계	2009~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정비 및 안내·편의시설 설치 • 연차별 등산로 휴식년제 실시 및 폐쇄 • 등산로 휴식년제 평가
3단계	2013~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정비 및 안내·편의시설 설치 • 연차별 등산로 휴식년제 실시 및 폐쇄 • 등산로 휴식년제 평가

4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현황 및 추진방향

- 모험형 관광수요의 증대에 따라 다양한 산악레포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일부에서는 산림훼손 문제 발생
- 산림내에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나 많은 임도시설이 산림경영 목적으로만 활용되어 효율성 저하
- ▶ 기존 임도시설을 정비하여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기존시설 정비와 국유림내 산악레포츠 시설을 확충

임도 활용 확대

산악레포츠 시설 정비

산악레포츠 시설 확대

1) 임도를 활용한 산악레포츠 코스 조성

□ 기존 임도에 대해서 산림휴양 이용가능성을 평가하여 등급 구분

- 임도의 물리적 여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휴양 이용등급 평가
 - 임도의 경사도, 노면상태, 연장거리, 노선배치 현황 등을 고려
- 이용가능성이 높은 임도는 안전시설 설치후 단계적으로 개방
 - 기존 등산로와 연결되어 활용성이 높은 임도부터 우선 개방
 - 임도별로 위험표지판, 사고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 임도노선별로 진입구간 등에 활용가능 종목 등을 안내

□ 임도 시설기준에 산림휴양분야 기준 반영 및 구조개량 추진

- 임도의 산림휴양용 활용을 위해 임도 설계 및 시설기준 개정
 - 산악레포츠 종목별 협회, 동호회 등과 시설기준 협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개정시 반영
 - 임도 신설시 산림휴양목적 활용을 위한 시설 설치 확대
-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시 급경사지, 위험구간에 대한 개량 추진
 - 산림휴양용 임도의 시설기준을 반영하여 구조개량사업시 적용

| 임도의 산악레포츠 활용 가능성 |

- 노 폭 : 임도의 노면은 약 4m 폭으로 설치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음
- 경사도 : 통행방향 경사도가 6도 이내로 시설되어 걷기,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음
- 기울기 : 곡선구간에는 차량이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하여 전복되지 않도록 산지방향으로 약 5도의 기울기를 두고 시설하고 있어 속도감이 있는 산악자전거 및 산악스키에도 활용 가능

2) 산악레포츠 시설 정비

□ 기존 산악레포츠 활용지역 정비

- 산림훼손정도를 고려하여 개소별로 시설설치 여부 결정
 - 산악레포츠 유형별로 산림피해정도, 시설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
 -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시설을 정비하되 산림훼손이 심한 지역은 폐쇄
- 산악레포츠 시설지역은 이용객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 기상이변시 이용객 안전을 위한 대피소 설치 및 구급장비 비치
 - 진입도로,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하여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 ※ 시설(기존·신규) 정비 : ('08) 100km → ('12) 500km → ('17) 1,000km
- 국유림내 시설은「국민의숲」제도를 활용하여 위탁운영 활성화
 -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들과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리

□ 석탄운반도로 등 산림내 레포츠 활용 가능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

- 폐광지역의 임도로 전환된 석탄운반도로를 산악레포츠 시설로 전환
 -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대상 도로현황,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 지자체, 공공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산악레포츠 프로그램 개발

3) 산악레포츠 시설 확대

□ 전국 권역별 산악레포츠 단지 설립

-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악레포츠 단지 지정·육성
 -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각종 산악레포츠 시설 설치
 - 지원시설 : 산악자전거 대여소, 산악승마 교육장, 산악마라톤 코스 등
- 해당 지자체 및 지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영
 - 기존 산악레포츠 대회 개최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

□ 국유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악레포츠 센터 건립

-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시 적정 규모의 산악레포츠 센터 건립
 -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승마 등이 가능한 종합연수센터의 건립 지원
- 기존 자연휴양림 가운데 권역별로 산악레포츠 전문 휴양림으로 특화
 - 자연휴양림 구역내에 별도의 전용 코스 설치
 - 초보자를 위한 장비대여, 정규 강습 서비스 제공
 - 자연휴양림별로 계절별로 이용가능 종목을 선정하여 홍보

단계별 추진일정

단 계	기 간	조사내용
1단계	2007~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임도에 대한 산림휴양 등급 구분 • 임도시설기준에 산림휴양분야 기준 반영
2단계	2009~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산악레포츠 활용지역 정비 • 국유림내 산악레포츠 시설 설치 • 산림휴양기준에 부합하도록 임도시설의 정비
3단계	2013~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산악레포츠 단지 설치 •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악레포츠 센터 건립

5 등산서비스 확대

현황 및 추진방향

- 등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은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적극적인 등산참여가 어려운 실정
- 등산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산행중 조난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구조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 주요 산별로 등산안내센터를 설치하여 등산안내인 등을 배치하고, 산악구조대를 운영하여 양질의 등산서비스를 제공



1) 등산안내서비스 확대

□ 100대 명산 등 주요 산별로 등산안내센터 설치·운영

- 주요 산 및 등산로 진입구간에 등산안내센터 설치·운영
 - 전국 주요 산 및 등산로별로 등산안내센터 설치
 - 100대 명산에 우선 설치한 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 봄·가을철에는 산불감시센터 및 입산통제 기능 부여
- 등산안내센터 시설 및 장비확충
 - 산별로 등산지도, 산악기상정보 등 다양한 등산관련 정보 제공
 - 등산안내 및 숲해설에 필요한 교구, 교재 등 비치
- 등산안내센터간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
 - 무전기, 구급약 등을 상비하고, 응급시 산악구조대와 연계체계 구축
 - 지역별, 산별로 등산안내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 자연휴양림, 한국관광공사, 시·도별 종합관광안내소 등과 연계하여 등산로 홍보

□ 100대 명산 등 주요 산별로 등산안내인 및 숲해설가 배치

- 등산안내인, 숲해설가 등을 배치하여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해설서비스 제공
 - 이용자용 교재 및 등산안내서비스 매뉴얼 제작
- 등산안내인 교육 확대를 통한 안내서비스 품질 향상
 - 등산안내인에 대한 신규·보수교육의 정례화
 -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 유도

□ 등산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등산안내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인력 육성
 - 지역별, 산별로 등산안내 프로그램 개발
 -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 유도
- 등산안내센터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 보급
 - 주요 산별로 표준 안내 프로그램에 필요한 책자, 지도 등 제작 지원

2) 산악기상예보 및 영상정보 서비스 제공

□ 산악기상 예보 대상지역 확대

- 100대 명산 등 주요 산을 대상으로 산악기상 예보서비스 실시
 - 현재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악기상 예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기상청, 민간 기상정보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산악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
- 주요 산별로 산악기상관측장비 설치 확대 및 정비
 - 산불방지용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활용하여 산악기상측정시스템 구축
 - 100대 명산에는 1개소 이상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기상관측 장비중 측정범위가 제한되어 활용이 어려운 장비는 단계적으로 교체

□ 산악영상정보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산악방송 등을 통한 주요 산별 산악영상정보 제공
 -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주요 산별로 실시간 산악영상 제공
 - 산악기상 예보가 어려운 지역은 영상정보를 통한 날씨확인 서비스 실시
- 지방청, 수목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시기별로 특화된 영상서비스 개발
 - 주요 수종별 개화 및 단풍정보, 알려지지 않은 산 등을 소개

3) 등산교육 확대

□ 등산학교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확대

- 보행중심의 산행을 위한 등산교육 프로그램 신설
 - 고산등정, 암벽등반 등 전문교육과정 외에 보행중심의 일반인 교육과정 신설
 - 자연교육 및 산림보호를 위해 생태교육 실시
-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등산학교를 지자체별로 실시
 - 한국산악회에 위탁하여 실시중인 등산학교를 모델로 지자체별로 운영
 - 희망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어린이 및 청소년 등산학교 운영

- 청소년 체험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등산학교 운영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휴무 토요일 등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인정 추진
 - ※ 초·중·고 특별활동시간 : 초1-3년 30~34시간, 초4-고1년 68시간
- 청소년 등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숲속수련장, 산림휴양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우선 설치
 - 학교별, 학년별 운영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개발
- 유년기 등산문화 체험기회 확대
 - 유아용 등산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단위로 유치원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

4)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

□ 조난객에 대한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및 각 지소별로 산악구조대 편성·운영
 - 119 구조대와 연계하여 조난 등산객의 신속한 구조 체계 확립
- 민간산악단체 등과 연계한 신속한 산악구조체계 구축
 -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등 지역별 산악단체와의 통신체계 확보

□ 구조인력의 전문성 강화

- 산악구조대별로 응급구조사 등 전문 구조인력 배치
 - 산악구조대별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여 법적 기준 충족
 - 항공관리소별로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응급구조사 위탁교육 실시
- 산악구조대원에 대한 정기적인 응급구조 교육 실시
 - 적십자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 이수
 - 성인용 심폐소생인형, 기관삽관 모형 등 응급구조 교육장비 확보 및 훈련

□ 응급구조 장비 및 시설 확충

- 산악구조대별로 필수 응급구조 장비 확보
 - 심실제세동기 · 휴대용산소소생기 ·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구급장비 보강
- 민간산악단체에 대한 구급, 구조 장비 지원
 - 들것, 부목 등 산악장비 및 응급구조장비 구입 지원

단계별 추진일정

단 계	기 간	조사내용
1단계	2007~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국가숲길 구간 등산안내센터 설치 • 산악구조대 편성 • 산악기상 및 영상서비스 시범실시
2단계	2009~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등산학교 운영 • 100대 명산에 대한 등산안내센터 설치 • 산악기상 및 영상서비스 확대
3단계	2013~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학교 교육기회 확대 • 100대 명산에 대한 등산안내센터 설치

6 등산지원 기반구축

현황 및 추진방향

- 등산관련 콘텐츠가 부족하고 마땅히 등산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등산책자나 모집산악회에 의존
- 등산인구의 증가로 각 지역마다 수 많은 산악회가 조직되어 운영중이나 이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실정임
- ▶ 산악·등산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다매체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 마련하고 산악단체와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산악정보시스템 구축

다양한 콘텐츠 개발

산악단체 파트너십 구축

1) 산악정보시스템 및 등산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등산·산악정보 포털사이트로 산악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 산림청 「숲에 On」시스템의 산악정보코너를 개선·발전
 - 기존의 등산로 관련 콘텐츠 보완 및 개선 추진
 -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안내 사이트와 연계하여 국내외에 홍보 강화
- 등산이용객의 정보교류 기능 강화
 - 등산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중주 경험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신설
 - 민박 등 숙박시설, 교류 및 체험프로그램, 산촌마을 특산품 등 소개
- 주기적인 자료갱신 및 이용활성화 제도 운영
 - 포인트제 운영, 산악정보시스템 회원을 대상으로 웹진 발송

□ 등산로 관리자를 위한 '등산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웹지아이에스(WebGIS)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기반 등산로 관리프로그램 개발
 - 등산자원조사를 통해 얻은 등산로 노선별 DB와 연계

- 현황조사, 노선관리, 안내 및 편의시설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등산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
- 지방청, 시·도 등 등산로관리청에 보급하여 등산로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정착
 - 시군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2) 산악·등산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 산악·등산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

- 산악·등산관련 콘텐츠 표준화 및 다양화
 - 주요 산별 개황, 등산지도, 등산로 소개 등 등산시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산별 표준등산정보 선정
- 케이블TV, 전문지 등과 연계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지역별, 시기별로 산림, 역사·문화, 관광자원 등을 소개
 - 우리 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그림 등을 소개

□ 기관 및 개인의 산악·등산관련 콘텐츠 개발 활성화

- 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악관련 콘텐츠 개발 및 방송 전담기관을 선정
 -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선발
 - 산악·등산관련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우수 콘텐츠 구매 지원
- 민간의 자율적인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 등산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등산경험을 게재하는 ‘등산리포터’ 선발
 - 정기적인 산악·등산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 발굴

□ 다매체 시대에 부응하는 등산·산악정보 전달체계 마련

- 등산 및 산악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연계성 강화
 - 방송사,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업체 등과 MOU 체결
- 산악전문 방송사와의 연계를 통한 산악·등산정보의 안정적 전달체계 마련
 - 산악전문 방송사를 활용한 등산안내인, 숲길조사원 교육 서비스 실시
 -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등산안내 서비스 시범 실시

3) 산악관련 기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등산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산악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등산정책협의회 구성
 - 등산·산악단체,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유도
 - 등산 및 산악관련 기관·단체간 정보공유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
-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
 - 주요 등산정책에 대한 의논 및 자문 실시

□ 주요 산별로 지역별 등산관리협의체 구성

-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국립공원사무소, 지역 산악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운영
 - 구간 연결성 확보, 휴식년제 운영 등 노선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 등산관리협의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민간 중심의 자율적 등산로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역별 등산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
 - 등산로 관리를 위한 기부금 모집 제도 도입

4) 등산문화캠페인 전개

□ 등산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흔적 남기지 않기(Leave No Trace)’, ‘등산예절 지키기’ 등 등산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시설물 훼손, 음주산행, 고성방가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 안내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고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안내책자, 리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 배포
 - 등산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자연친화적 등산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산악회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 지원

- 산악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등산문화 개선 운동 전개
 - 가칭 ‘산악회 1구간’ 자매결연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

- 주요 산별, 등산로별로 등산로 모니터 및 등산문화 계도를 위한 ‘명예산지기’ 지정
 - 산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산별로 희망자를 ‘명예산지기’ 로 지정

5)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 등산지원 전담기관으로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근거, 조직체계, 임무 등 관련 규정 반영
 - 국유재산 무상사용, 대여 등 지원 근거 반영
- 장기적으로 가칭 ‘국립등산지원센터법’ 제정 추진

□ 등산로 관리 및 등산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국가등산로의 관리 및 등산안내 서비스 업무 전담
 - 국가등산로의 안전점검 및 정비실시
 - 등산안내 및 숲해설 등 체험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등산로의 위탁관리 수행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등산로 관리 수행

6) 국제협력 확대

□ 등산·산악관련 기술교류 확대

-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의 등산로 및 등산관련 제도 벤치마킹
 - 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 수용력 산정 등 관리기술 도입
- 민관협력체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등 선진적 운영체계 도입
 - 선진국의 트레일 관리단체와의 인적교류 추진

□ 민간차원의 국제협력 활성화

- 자연보호 및 등산문화 개선운동 단체와의 교류 지원
- 민간 산악단체의 해외 원정을 통한 국위 선양활동 지원

단계별 추진일정

단 계	기 간	조사내용
1단계	2007~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 산악전문 방송과의 연계성 확보 • 등산정책협의회 구성·운영
2단계	2009~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 및 등산관련 콘텐츠 개발 • 주요 산별 등산관리협의체 구성
3단계	2013~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 및 등산관련 콘텐츠 개발 •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제5장

투자계획

1. 투자계획 총괄 61 2. 세부 투자계획 63

1 투자계획 총괄

- 본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390억원이며, 국고 1,554억원(65%), 지방비 836억원(35%)으로 구성됨

1)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연도별로는 2007년에 전체투자비의 4.5%(73억원), 제5차 산림기본계획 전반부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56%(1,332억원), 후반부인 2013년부터 2017년에는 40%(950억원)를 투입함
- 재원별로는 국고가 전체투자비의 1,554억원(65%), 지방비는 836억원(35%)을 투입함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7년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		비율
			전반기	후반기	
합계	239,007	10,789	133,202	95,016	100%
국비	155,418	7,266	88,066	60,087	65.0%
지방비	83,589	3,523	45,136	34,929	35.0%
비율	100%	4.5%	55.7%	39.8%	-

2) 사업별 투자계획

- 등산로 정비 등 시설정비사업에 84.4%(2,017억원), 등산안내센터 운영 등 서비스 제공에 15.6%(373억원)를 투입

사업별·자원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목	계	2007년	제5차 기본계획 기간	
				전반기	후반기
합계	사업비	239,007	10,789	133,202	95,016
등산로 실태조사	사업량(명)	760	410	300	50
	사업비	11,830	6,382	4,670	778
	국비	8,280	4,467	3,269	545
	지방비	3,550	1,915	1,401	234
등산지도 제작	사업량(도엽)	786	-	416	370
	사업비	1,572	-	832	740
	국비	1,572	-	832	740
	지방비	-	-	-	-
등산로 정비	사업량(km)	2,595	141	1,054	1,400
	사업비	131,086	3,632	84,054	43,400
	국비	74,006	2,024	50,902	21,080
	지방비	57,080	1,608	33,152	22,320
등산로 모니터링	사업량(명)	1,850	-	925	925
	사업비	12,362	-	6,181	6,181
	국비	10,357	-	5,179	5,179
	지방비	2,005	-	1,002	1,002
등산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량	100	-	50	50
	사업비	24,199	200	9,600	14,400
	국비	16,999	200	6,720	10,080
	지방비	7,200	-	2,880	4,320
등산교육	사업량(명)	26,700	1,200	10,000	15,500
	사업비	4,448	200	1,666	2,582
	국비	3,174	200	1,166	1,808
	지방비	1,274	-	500	775
산악레포츠 시설확충	사업량	1,000	-	500	500
	사업비	46,405	-	22,845	23,560
	국비	34,255	-	16,770	17,485
	지방비	12,150	-	6,075	6,075
산악구조대 운영	사업량	110	-	55	55
	사업비	2,000	-	1,000	1,000
	국비	2,000	-	1,000	1,000
	지방비	-	-	-	-
산악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	2,850	300	1,500	1,050
	국비	2,850	300	1,500	1,050
	지방비	-	-	-	-
등산문화진흥	사업비	2,255	75	855	1,325
	국비	1,925	75	729	1,121
	지방비	330	-	126	204

2 세무 투자계획

연도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사업비	239,007	10,789	25,163	31,226	30,583	27,874	18,356	17,863	18,918	19,182	19,429	19,624
등산로 실태조사	사업량(명)	760	410	200	50	50	-	-	-	-	50	-	-
	사업비	11,830	6,382	3,113	778	778	-	-	-	-	778	-	-
등산지도 제작	사업량(도엽)	786	-	90	86	80	80	80	80	80	70	70	70
	사업비	1,572	-	180	172	160	160	160	160	160	140	140	140
등산로 정비	사업량(km)	2,595	141	174	200	200	200	280	280	280	280	280	280
	사업비	131,086	3,632	13,331	22,130	20,690	19,223	8,680	8,680	8,680	8,680	8,680	8,680
등산로 모니터링	사업량(명)	1,850	-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사업비	12,362	-	1,236	1,236	1,236	1,236	1,236	1,236	1,236	1,236	1,236	1,236
등산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량	100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사업비	24,199	200	1,453	1,707	1,960	2,147	2,333	2,520	2,707	2,893	3,080	3,200
등산교육	사업량(명)	26,700	1,200	1,500	2,000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3,500	3,500
	사업비	4,448	200	250	333	333	333	417	417	500	500	583	583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량	1,0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업비	46,405	-	4,805	4,105	4,860	4,160	4,915	4,215	4,970	4,270	5,025	5,080
산악구조대 운영	사업량	110	-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사업비	2,000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	2,850	300	460	4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등산문화진흥	사업비	2,255	75	135	155	155	205	205	225	255	275	275	295

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www.foa.go.kr



제6장

부 록

1.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실행원칙 67 2. 전국 등산로 현황 69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70

1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실행원칙 (Leave No Trace)

원칙 1 여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 여러분이 방문할 지역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을 알아 두세요.
- 갑작스런 날씨 변화, 위험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피하여 여행계획을 세우세요.
- 작은 그룹으로 방문하세요. 큰 그룹은 4~6명의 그룹으로 나누어 방문하세요.
-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은 음식은 다시 포장해서 가져오세요.
- 등산로 주변에 있는 페인트 표시, 돌무더기 또는 리본표시를 없애기 위해 지도 및 나침반을 사용하세요.

원칙 2 이동하거나 야영할 때는 바닥이 단단한 곳을 이용하세요

- 바닥이 단단한 곳이란 정비된 등산로, 야영장, 바위, 자갈, 건초, 눈을 말합니다.
- 호수와 계곡가에서 적어도 6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야영하여 수변지역을 보호하세요.
- 좋은 야영장이 있지만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야영장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 대중적인 지역에서는
- 기존 등산로와 야영장을 사용하세요.
- 등산로가 젖어 있어도 등산로 중앙으로 보행하세요.
- 야영장을 작게 만드세요. 식물이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세요.
- 자연상태 지역에서는
- 야영장과 등산로를 만들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세요.
- 자연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장소는 피하세요.

원칙 3 쓰레기를 바르게 처리하세요

- 가지고 온 것은 가지고 가십시오. 야영장과 머물렀던 지역에 쓰레기나 버린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쓰레기와 남은 음식, 찌꺼기는 싸서 가져오세요.
- 물, 야영장, 등산로로부터 적어도 60미터 이상 떨어져서 20센티미터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배설물을 묻으세요.
- 화장지와 위생제품은 가지고 가십시오.
- 몸이나 그릇을 씻으려면 물을 시내거나 호수로부터 60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길러온 다음에 적은 양의 생물분해성 비누를 이용하여 씻으십시오. 사용한 개숫물은 주변에 흩어 뿌리세요.

원칙 4 여러 분이 찾아낸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주세요 ●

- 과거를 보존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문화 또는 역사적인 구조물이나 유물을 만지지 마세요.
- 바위, 식물 및 다른 자연물들을 당신이 발견한 그대로 남겨두십시오.
- 외래종이나 침입종 생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 구조물, 가구, 호를 만들지 마세요.

원칙 5 모닥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

- 모닥불은 주변지역에 오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버너를 이용하여 조리하고 야간에는 손전등을 이용하세요.
-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에서는 주변에 돌레를 파고 불을 피우세요.
- 불을 작게 유지하세요.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는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세요.
- 모든 나무를 완전히 태워 재를 만들고, 모닥불을 완전하게 끈 다음 차가워진 재를 뿌리세요.

원칙 6 야생동식물을 존중하세요 ●

- 야생동식물은 떨어져서 관찰하고 야생동물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먹이를 주면 야생동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자연습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포식자나 다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음식물과 쓰레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애완동물을 항상 통제하거나 집에 두고 오세요.
- 짝짓기 시기나 둥지를 만드는 시기, 새끼를 기르는 시기, 겨울철 등 민감한 시기에는 야생동물을 피하세요.

원칙 7 다른 방문자를 생각하세요 ●

- 다른 방문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 예의바르게 행동하시고, 등산로에서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 등산로에서 짐을 가진 사람과 마주쳤을 때에는 아래쪽으로 비켜 주세요.
- 쉬거나 야영할 때에는 등산로나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 자연의 소리가 있는 곳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전국 등산로 현황

구분	산(개)	노선(개)	연장거리(km)	정비대상(km)	비고		
계	1,735	4,290	17,598	4,894			
지자체	소계	1580	3796	14,921	4,716		
	서울	41	450	323	44		
	부산	50	367	634	142		
	대구	31	87	274	108		
	인천	35	68	198	35		
	광주	20	69	212	70		
	대전	27	80	303	222		
	울산	22	67	201	107		
	경기	175	345	1,503	215		
	강원	150	222	1,352	195		
	충북	97	169	975	298		
	충남	162	368	1,196	720		
	전북	87	247	823	398		
	전남	228	468	1,798	776		
	경북	274	442	2,818	622		
	경남	172	219	2,137	655		
	제주	9	128	173	107		
	지방청	소계	140	225	1,521	178	
		북부	38	51	339	15	
동부		35	80	640	84		
남부		34	53	332	14		
중부		15	19	89	3		
서부		18	22	121	63		
국립공원	소계	15	269	1,156	-		
		15	269	1,156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2005. 8. 4 법률 제7676호	제정 2006. 8. 4 대통령령 제19641호	제정 2006. 8. 4 농림부령 제1536호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p>제7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①산림청장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산림문화·휴양 체험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2. 숲해설가 교육과정 3.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p>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⑦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및 인증기준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절차 등)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위원회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p> <p>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 외에</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3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p>
<p>제8조(인증심사위원회)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 산림문화·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또는 연구관이상의 자로서 산림청장이 임명한 자 2. 산림문화·휴양, 산림생태, 산림환경교육, 숲해설 또는 산악등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3.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p>③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간사는 산림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8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인증심사원의 활용) ①산림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중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 2.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3. 산림문화·휴양, 산림환경교육 및 숲해설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p>②인증심사원의 선발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9조(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제11조(등산안내인의 활용)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산 등 휴양의 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등산안내인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산안내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등산안내인의 활용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등산안내인 활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등산안내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의 등산로</p> <p>4. 그 밖에 등산안내인 활용기관의 장이 등산안내인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p> <p>②등산안내인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산교육 및 안내에 관한 내용 2. 등산문화의 진흥에 관한 내용 3. 산림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내용 4. 법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 활동 등 등산인의 안전에 관한 내용
<p>제5장 등산로 등</p> <p>제23조(등산로의 조성 등)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등산로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이를 보전·관리하여야 한다.</p> <p>②등산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관할 산림의 등산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③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관할 등산로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등산로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④등산로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 조사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등산로 등</p> <p>제11조(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p>제4장 등산로 등</p> <p>제20조 (등산로 실태조사의 대상지역등)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역사적·문화적·생태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등산로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5.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p>②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 현황 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p>제24조(등산로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산로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역사·문화유적지와 연계되는 등산로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산로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5조(등산로의 휴식년제) ①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등산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등산로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산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p>		<p>제21조 (등산로의 휴식년제) ①법 제25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산로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등산로의 이용안내 4.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 5.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불예방,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2.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출입 4.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26조(등산로 등의 협의매수) 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산로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제27조(등산교육의 실시 등) ①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산림청장은 등산학교 운영을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산림청장은 등산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2조(등산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p>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등산로관리청은 등산인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구조업무를 행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이하 “산림항공구조대”라</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한다)를 말하며, 산림항공관리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p> <p>②산림항공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등산인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소방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p> <p>제13조(산림항공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p>	
<p>제7장 벌칙</p> <p>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p> <p>2.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p> <p>3.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한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벌칙</p> <p>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 Healthy Forest

—— Rich Mountains

—— Happy People



www.foa.go.kr